

大學圖書館 施設基準設定의 方向

發表者 玄 圭 變
(首都醫大 圖書館司書長)

1. 序

本小論의 目的은 韓國의 圖書館法 施行令(未制定)中 大學圖書館의 施設基準을 檢討하고 이에 하나의 方向을 提示하려는데 있다. 施行令中 施設基準이 갖는 意義는 다음의 두가지라 하겠다.

첫째로 그것이 法的規制力を 갖게되어 施設에 對한 強制的要求를 할수 있다는 點이고

둘째로 그것이 圖書館成長에 對한 自然發生的要素의 依存度를 떠나서 人爲的構成要素로서 圖書館의 强制成長을 招來할수 있다는 點이다.

따라서 施設基準을 設定함에는 蓋然性에 立脚한다면 그意義는 減少될 것이다. 여기서 強調되어야 할것은 具體的이고 合理的인 適正數値을 明示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問題가 하나의 羅列에 끝힘을 避하기 위하여 論議할 項目을 다음의 두가지 項目에 局限한다.

- 1) 藏書의 適正水準
- 2) 閱覽室의 適正水準

附記하여 들것은 이것은 앞으로 3年間에 到達할 施設基準을 일단 策定하고 3年後에는 또다시 適正基準을 세운다는 前提를 論點의 限界로 하게 될것이다.

2. 藏書의 摘正水準

이問題에 있어 根本的으로 考慮되어야 할것은 從來까지 實施되어 오던 圖書의 數的規制方法이 藏書構成에 있어 病廢的이고 畸形的인 形態를 招來하였다는 것이다. 圖書의 數的通制가 招來하는 病廢는 圖書館藏書에 만 局限된것이 아님은 再言할 必要가 없을것이다(註 1).

이러한 原因을 除去하는 길은 藏書構成에 關한 法規制力이 數的通制에만 局限되지 말고 質的通制에도 關與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不幸히도 오늘날 우리들의 現實은 美國에서 行하는 바와 같은 質的通制方法 즉 藏書評價表(Standard List)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短時日內에 合理的인 評價表을 만든다는것도 期待할 수 없는 實情이다. 여기서 圖書의 數的通制로서 質的向上을 도모할수 있는 最大限의合理的方法을 摸索하지 않으면 않된다.

Fargo, Lueil F.는 이러한 方法(즉 數的檢討를 通하여 藏書의 質를 評價하는 方法)에 着案하여 다음과 같은 項目을 提示하고 있다.

1. 書名을 달리하는 圖書數의 檢討
2. 分配의 均衡度(D.C.의 重要綱目에 準하여)
3. 藏書內容의 適切度(基本目錄을 check

한다)

4. 出版物의 最新度(藏書中 近 10年間 發行冊數가 點하는 比率)(註 2)

上記 四項目中 앞의 두개의 項目 즉 圖書數를 檢討하는 것과 分配의 平衡度를 檢討하는 方法은 數의in 規制로서 藏書의 質的水準을 維持하는 하나의 合理的方法이라 할것이다(註 3).

(註 1) 全國圖書演大會가 開催될때마다 이點에 關한 신랄한 批判을 한바있다. 여기서는 이를에 대한 批判을 省略키로 한다.

2. 도협월보 3권4호, 1962, 7-8. p. 191-204.

2. 도협월보 4권8호, 1963, 11-12. p. 351-358. 참조

(表 1)

韓國大學設置基準令	日本國立大學改善要項	日本私立大學改善要項	美國圖協基準	韓國試案
學生 1人當 30冊	學生 1,000名에 人文系 5萬冊 自然系 3萬冊 1人當 人文系 50冊 自然系 30冊	學生 1,000名 1人當 50冊 學生 5,000名 1人當 40冊 學生 10,000名 1人當 35冊	600名 50,000冊 1人當 85冊	學生 1人當 30冊

上記表에 依하면 現在韓國施案(註 5)으로 되여 있는 水準은 各國의 基準에 比해 最低水準이 됨을 알수있다. 그러나 이것에 韓國의 實情에 適合한가 아닌가는 檢討되여 쳐야 한다.

比較的健全히 發展되고 있다고 생각되

(表 2)

學校名 區分	高麗大圖書館	東國大圖書館	成均大圖書館	延世大圖書館	梨花大圖書館	總計	學 生 1人當
學 生 數	7,245	4,935	7,526	6,307	8,300	34,313	
年間增加冊數	3,808	2,589	7,609	5,904	3,900	23,806	0.7冊
藏 書 數	167,556	101,152	116,845	164,464	131,000	681,067	20冊

(註 2) Fargo, L.F. The Library on the school. 4th ed. 1949. 參照

(註 3) 基本目錄을 check 한바거나 10年間의 出版部數를 檢討한다는것을 法으로 規定한다는것은 거의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7) 圖書數

大學圖書館이 資料의 豊富度로서 그 優劣를 가리게됨은 말할 필요도 없다. 圖書館資料의 豊富性을 強要하기 為하여 于先 數量으로 全體의 基準을 定하고 이를 明示하는 方法은 藏書構成을 合理化하는데 그 捷徑이 된다 할것이다. 이러한 方法은 各國에서 흔히 行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實例를 보면 表1과 같다.

(註 4)

는 5個圖書館을 標本으로 하여 調查한 측表2와 같은 結果를 얻었다.

이表에 依하면 學生 1人當 年增加冊數는 實際로는 0.7冊이 되고 學生 1人當 既存冊數는 20冊이다(註 7).

(註 6)

그런데 1人當 30冊의 水準을 3年內에 到達하려면 적어도 現在의 增加量의 4倍程度이어야 한다.

學生數가 적은 大學에서는 年增加比率(學生 1人에 對한)과 既存冊數의 比率이 比較的 높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現在의 3倍以上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點으로보아 現在 韓國試案으로 되여 있는 要求水準은 “無理한 基準”을 策定한 것이 된다. 이러한 “無理한 要求”는 또다시 圖書館의 畸形的 藏書構成을 갖어 오게 됨을 免치 못할 것이다.

現實的方案으로는 年增加冊數比率에 2倍程度에 達하는 數値를 基本으로 하여 3年間에 達할 學生 1人當 冊數를 策定함이 理想的일 것이다.

따라서 3年間에 增加冊數를 5冊으로 하고 여기에 既存冊數를 加算한 學生 1人當 25冊의 水準을 適正基準으로 합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註 4) 日本圖書館協會 圖書館關係 法規基準集 東京, 日本圖協, 1962. 參照

(註 5) 現在 施行令中 韓國圖書館協會와 文教部에서 施設基準으로 立案되고 있는 것으로 아직 確定한 것은 아닌 것 같다.

(註 6)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의 圖書館 서울, 韓國圖協, 1964에서 抽出하였음.

(註 7) 學生數의 總計로서 年間增加冊數의 總計를 除한 數을 1人當 年增加冊數로 하였고 同一한 方法으로 學生 1人當 既存冊數를 計算하였다.

(二) 分配의 均衡度

앞서 例示한 Fargo의 方法 즉 藏書의 分配比率이 評價의 側定이 될 수 있다는 見解를 따라 各圖書館의 藏書比率을 法으로 規定하여 준다면 比較的 健全한 藏書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點에 着眼하여 現韓國試案에서는 各

學科別 基本圖書量 策定하여 分配의 比率를 最少限 維持하려 하고 있다. 各學科別 既存冊數의 策定數를 보면 別表와 같다.

(表 3)

學科	人文系	理工系	藝能系
冊數	學科當 4,000種	學科當 3,000種	學科當 1,500種

또한 日本大學設置基準令中 圖書館條項에도 다음과 같은 基本 圖書를 策定하고 있다.

(表 4)

學部名	文學部	法學部	...美術에 關한 學部
圖書數	8,000 以上	10,000 以上	... 5,000
二個以上의 學科로構成된 學部의 一學科當 冊數	3,000 以上	5,000 以上	... 1,500

(註 8)

여기서 注目하여야 할 點은 다음의 두 가지 點이라 할 것이다.

1) 現試案의 基本圖書側定值는 무엇을 基準으로 하였으며 그數置는 우리를 現實에 適合한 것인가

2) 學科의 分配單位의 配定이 適合한 것인가.

이제 이問題를 따로히 分離하여 보기로 한다.

(註 8) 日本圖書館協會 圖書館關係法規基準集 東京, 日本圖協, 1962. 參照

a) 基本圖書의 平均側定值

基本圖書는 各學科가 必要로 하는 必須圖書를 말하는 것으로 適正數는 該當學科의 特性에 依存하여 決定될 것이다. 그러나 必要數를 決定하는 客觀的尺度는 出版部數에 依하여야 될 것이다. 例컨데 人文

系보다 理工系의 出版部數가 平均的으로
많다면은 理工系의 基本圖書數는 人文系
의 그것에 比해 많아야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韓國의 出版現況을 살펴
볼 必要가 있다. 1948年부터 1962年까지
14年間의 韩國의 出版種數는 總 22,171種
이고 63年 1年間의 種數는 4,938種으로서
이中 単화류(2147) 學習參考書(622) 兒童
圖書(287)를 뺀다면 1882冊이 된다. 이들을
各主題別로 살펴보면 表 5와 같다(註 9).

이表를 본다면 1個 學科가 1年間에 準
備할 수 있는 韩國書籍 最大限의 平均冊數

(表 5)

區 分	種 數	區 分	種 數
總 記	74	理 學	73
宗 教	196	工 學	130
哲 學	48	醫 學	50
社 會	法政 248 社經 158 教育 104	藝 術	75
言 語	93	文 學	469
		歷 史	47
		其 他	130

는 關聯主題를 加한다하더라도 150冊程度
에 머드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3年間에는
約 500種이 될 수 있을 것이다. 國內書籍
과 國外書籍의 購入比率를 1:2로 하면(註
10) 3年間에 準備할 수 있는 基本圖書數는
1,500種이 될 것이다. 이것은 出版部數에
依한 平均基本圖書數로서 3年間에 準備할
수 있는 最大可能數値라 할 것이다.

(註 9) 韩國年鑑, 1964. 서울, 韩國年鑑社,
1964. p. 513. 參照

(註 10) 먼저 例舉한 5個圖書館의 年增加 冊
數에 對한 平均値는 約 4700冊이 된다. 이
中 韩國出版物이 占할 수 있는 最大可能數
를 1500冊이라 한다면 約 2倍에 該當되는
冊數가 國外書籍으로 充當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 分配比率의 適正值

Wilson L. R. 이 報告한 “A syllabus on
the improvement of college institution
through library use”를 보면 大學圖書館의
藏書構成을 決定하는 要因으로서

1. 大學의 目的
2. 大學의 教科單位
3. 教授陣
4. 學生集團의 構成을 들고 있다.

즉 大學圖書館藏書는 大學의 學科單位
에도 正比例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大學藏書의 分配比率은 主로 保有學科
에 該當되는 主題에 多은 比率을 차지하
게 됨을 意味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現韓國의 學科를 일별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韩國의 大學學科種類
數는 總 111個種으로서 文敎部가 分類한
區分과 學科數를 보면 다음과 같다.

(表 6)

1. 語文學系	7	2. 藝術學系	9
3. 人文學系	16	4. 社會學系	9
5. 體育學系	1	6. 理 學系	9
7. 工 學系	16	8. 醫 藥 系	5
9. 農 林 系	12	10. 水 產 系	5
11. 師 範 系	21		

(註 11)

이 區分은 韩國의 國家的特性을 爲主로
하여 分類된 것이라 하겠다. 基本圖書를
策定함에는 적어도 이 程度의 細區分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藏書構成의 各主題別 分配比率을
살펴본다면 美國의 다—나, 英國의 Brown,
日本圖協編, 圖書館小識의 編者等이 提示
한 標準分配比率를 參考로 할 수 있다.

表 7中 第1末項인 平均値는 三者の 數
值을 平均한 數로서 主題比率의 가장

(表 7)

部分	다나 의比率	Brown 의比率	圖書館 小 識	平均
一般學哲	5 1	3 4	5 4	4 3
宗教社會	3 10	5 7	3 18.5	3.7 12
言語	1	4	3	2.7
理學	9	9	8.5	8.8
工藝	7	9	9.5	8
美術	4	7	4.5	5
文學小語	12~20	28	17	23
傳記	10	8	8	9
歷史	13	8	7	10
地誌	10	8	6	8
기타	—	—	6	6

合理的인 數値를 算出한 것이다(註12).

이제 앞서언어진 3年内 達할 수 있는 平均圖書數와 文教部의 學科區分 또 上記表에서 언어진 平均分配比率을 關聯시켜 볼 단계에 이르렀다.

主題分配比率中 가장 中央值라 할 수 있는 理學의 8.8%를 平均圖書數 1,500으로 한다면 各學科가 必要로 하는 基本圖書數를 다음과 같은 극히 初步的인 數式을 通하여 그 適正值을 計算할 수 있다.

$$x = \frac{A \cdot y}{B}$$

여기서 A는 基本圖書의 平均值 1500이고 B는 分配比率의 中央值 8.8%를 말하며 y는 分配比率를 말하며 x는 基本圖書를 뜻한다.

例컨대 社會科學은 基本圖書數를 x로, y를 12로 할 수 있다. 따라서

$$x = \frac{1500 \times 12}{8.8} \approx 2000$$

이러한 計算을 通하여 언어진 數値를

基本으로 하여 算出한 基本圖書數는 大略表 9와 같다.

(表 8)

學 科	基本圖 書 數	學 科	基 本 圖 書 數
語文學系	2000	理學系	1500
藝術學系	1000	工學系	1500
人文學系	3000	醫藥系	1500
社會學系	2000	農林系	1000
體育學系	1000	水產系	1000
		師範系	各系에 準함

이 表를 얻고자 여지껏 複雜한 課程을 거친 셈이다 여기에 例示된 數値는 韓國의 與件을 土臺로合理的인 聯關을 맺어 언어진 結果라 할 것이다(註 13).

(註11) 文教部, 編. 文教要覽, 1963. 서울, 中央教育研究所, 1963.

(註12) 毛利宮彦, 圖書館學序說. 東京, 長谷川書店, 1953. p. 129~130 참조.

(註13) 그러나 이 數는 單一學科반으로 形成되는 大學에는 該當되지 않고 있다 면서 例示한 日本大學設置基準令을 보면 2個以上의 學科로 形成되는 學部와 1個學科로서 形成되는 學部와의 比率이 1:3으로 되어 있다. 韓國에는 現在 1個學科로서 形成되는 大學은 오로지 醫科大學뿐인고로 이에 대한 適正數를 부여하면 될 것이다. 이 問題는 좀더 면밀한 調査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學生閱覽室의 數的規定

閱覽室의 適正數量 決定하는 要素는 大學圖書館의 제일 큰 奉仕對象인 學生數라 할 것이다. 學生數를 基準으로 閱覽室座席數를 決定하고 있는 各國의 實例를 보면 다음과 같다.

(表 9)

韓國試案	A.L.A	日本大學設置基準令	日本國立大學圖書館改善要項	日本私立大學圖書館改善要項
25%	$\frac{1}{3}$	$\frac{5}{100}$	10%~20%	10%

이表에 依하에 韓國試案은 美國의 水準에는 未達이고 日本의 水準은 超過하고 있다. 그런데 實際韓國水準을 본다면 大體로 10%程度라는 것이 다음表에 依하여 判明되고 있다.

(表10)

校名	內容	學生數	座席數	百分率
延世大	6,307	522	0.9	
成大	7,526	576	0.8	
梨大	8,300	1,100	13	

이統計의 標本抽出이 合理的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韓國의 大學圖書館이 大體로 10%의 座席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常識에 벗어난 것이라곤 말할수 없을 것이다.

만일 基準年度에 25%의 座席數를 確保하려면 現在의 1.5倍의 增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실제로 3年內에 現在의 1.5倍의 增加를 시킬수 있을론지는 아직 의문이라 하겠으나 全體的으로 볼때 그 實現可能牲은 极히 희박하다 할것이다.

따라서 25%의 水準은 改正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理想的인 數로는 20%로 하고 設置하여야 할 最低座席數를 15%로하여 15% 내지 20%로 定함이 좋으리라고 생각된다.

4. 結論

여지껏 論議한 問題의 要點은 그것이 韓國의 興件을 土臺로 하고 이에 實現可能數置를 設定하는 하나의 方向을 例示한것에 不過하다. 또한 그 方法이 蓋然의이고 悟性的인 判断을 떠나서 具體的이고 實現的인 結果를 가져 오도록 하였다는데 그 核心이 있다 할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의 몇가지 假定이 서있음을 알수 있다.

첫째로 여기에 引用하고 있는 모든 統計數字가 正確한것으로 假定하고 있으며

둘째로 그 標本抽出이 適當하다고 假定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假定이 正當치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方法 그 自體는 變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假定이 變한다 하더라도 數의 變動만이 있을것이고 數式 그 自體의 變動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하한 施設基準에 關한 現試案은 좀더 면밀하고 合理的인 方法으로 再檢討되어 졌야 할것이다.

理想的이라고 생각되는 水準을 넓어 놓고 내세운다면 實現的으로는 無理한 要求가 되며 이러한 強要是 또다시 圖書館의 畸型的이고 痘癥的인 要素를 배태하게 할 것이다.

끝